

알콜첨가제 논란,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글·김 신 | 석유가스신문 취재팀장

석유업계 종사자들 상당수는 주변 지인(知人)들로부터 세눅스로 대표되는 알콜 첨가제와 관련해 이런 저런 상담을 의뢰받은 경험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 놓는다.

‘판매사업에 뛰어 들까 고민중인데 석유 전문가 생각은 어떻느냐’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중에는 ‘연료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서 알콜첨가제 소비가 늘어나면 석유수입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 왜 정유사들이 막지 못해 안달이냐’며 제법 전문가적인 식견을 앞세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세눅스에 대한 각종 언론의 보도행태가 기존 석유연료의 대체효과와 가격경쟁력에 맞춰지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와 대기업 집단인 정유업계가 집단이 기적인 발상에서 전도유망한 에너지 벤처기업을 폄박하는 것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을 감안 하면 일반인들이 알콜첨가제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이야 어찌됐든 산업자원부가 세눅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해석하며 생산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용제수급조정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알콜첨가제의 원료공급 차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장에 유통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쳇말로 ‘온 정부기관이 나서 알콜연료를 만들거나 판매하면 죄를 짓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논란이 여전히 판매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석유위기에 편승한 보상심리가 한몫해

한날 연료첨가제에 불과한 제품이 온 나라의 연료시장을 쥐락펴락하고도 모자라 정부당국의 에너지정책에 정면 대응하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먼저 에너지자원빈국의 국민들이 갖는 일종의 피해의식과 그에 대한 막연한 보상심리의 힘이 컸다.

세금차이를 이용한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등장한 알콜연료는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법의 취약성까지 등에 업으며 해를 넘겨 가며 석유연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고 6위의 석유소비국이며 정작 기름 한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안정적인 석유수급이나 가격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OPEC의 적극적인 석유생산통제와 이라크를 둘러싼 미국의 위협이 본격화되고 마침내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석유자원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석유를 대신하는 값싸고 품질좋은 연료첨가제의 등장은 곧바로 언론의 대서특필로 이어졌고 일반 소비자들 역시 앞, 뒤 가리지 않고 환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알콜첨가제의 정체가 세금탈루를 노린 전형적인 가짜 휘발유로 어떠한 에너지수입대체효과도 없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대체연료로서의 가능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석유를 대신할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보상심리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사용의 편리성이나 가격경쟁력도 한 몫하고 있다. 흔히 대체에너지의 대부분은 그 보급과 상용화를 위해 엄청난 시설 개조비가 들어가고 공급비용 역시 비싸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알콜첨가제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상태로 판매돼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기존 자동차 연료에 타서 쓰기만 하면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소비자들의 탄성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대체연료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용의 편의성과 세금차이를 이용한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등장한 알콜연료는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법의 취약성까지 등에 업으며 해를 넘겨 가며 석유연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다.

애매모호한 성격이 논란 부채질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세눅스로 대표되는 알콜첨가제는 그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태생적으로 논란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

알콜첨가제는 분명 석유사업법에 명시된 석유제품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체에너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첨가제 적합판정을 받아 내기는 했지만 휘발유와 6:4의 비율로 섞어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첨가제로 보기만도 힘들다.

대체연료로 인정받은 바이오디젤조차 경우에 혼합할 수 있는 비율이 8:2에 불과한 것에 비춰보면 알콜연료는 혼합비율 그 차제만으로도 첨가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정체가 뚜렷하지 않고 소속이 불분명한 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차이는 있지만 지난 1999년경 석유유통시장을 어지럽혔던 석유화학부산물 역시 알콜첨가제와 비



슷한 모습으로 시장에 유통되며 한바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C9+(씨나인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석유화학 부산물은 등유나 경유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석유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금이나 부과금 등 각종 법적 의무를 면제받으며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경쟁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논란을 겪은 끝에 ‘부생연료유’라는 명칭으로 제도권(석유제품에 편입됨)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석유유통사업자들을 크게 위협했다. 마땅한 법률적 규제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던 것도 석유화학부산물과 알콜첨가제간의 님은 꼴이다.

석유제품이 아니면 유사석유도 아니다?

알콜연료 개발자들은 수년전부터 대체연료로 인정받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알콜연료 개발사로 알려진 H상사는 2000년초 산업자원부에 알콜연료의 석유사업법령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알콜연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없고 질의자의 숨은 뜻을 짐작할 수 없었던 산업자원부는 ‘알콜연료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01년 7월 세녹스 생산회사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적합 판정을 얻어내 휘발유와 6:4로 혼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 이번에는 산업자원부에 또다시 알콜연료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추가 질의에 나섰지만 2002년 4월경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결국 세녹스가 휘발유 대체연료로 정당하게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환경부의 첨가제 적합 판정을 통해 정부부처와의 충돌과정에서 충분한 시비끼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C9플러스 판매사업자들 역시 석유제품으로서의 판매가능성이 알려지기 이전에 산업자원부에 질의해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확보한 바 있다. 결국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상에서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알콜연료와 C9플러스의 판매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이같은 산자부의 원론적인 유권해석은 세녹스의 경우에는 법정 공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제조사 변호인측이 세녹스가 유사석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석유제품에

세녹스 생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유사석유에 대한 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미납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고 제품생산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2000년 초) 환경부로부터 적법하게 첨가제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2001. 7월) 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즉 세녹스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첨가제 제조기준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 또 환경부 운용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된 제품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2001년 7월)을 근거로 '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킨 첨가제인 만큼 산자부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세녹스 유통을 막겠다며 산업자원부가 강행한 용제수급조정명령 역시 해당제품의 유사석유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세녹스를 유사석유로 규정하고 생산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산업자원부가 알콜연료가 어떤 용도로 또 어떤 유통경로로 판매될 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내렸던 원론적인 유권해석으로 스스로를 옹아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유사석유 법정 논란 종결 시점이 관건

세녹스의 유사석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알콜첨가제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만에 하나 법원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도 오는 6월말부터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극히 소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현재와 같은 대량 용기판매는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설령 세녹스가 합법적인 자동차연료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해도 강력한 유통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가진 정유사가 알콜연료시장에 동참하게 되면 어차피 기존 알콜연료 생산회사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분석하고 있다.

물론 과거 수많은 가짜휘발유 제조범들이 유사석유를 규정한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위헌시비를 걸었고 자신들은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을 감안하면 세녹스 역시 유사석유로 판정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같은 법정판결이 종지부를 찍게될 시점이 언제인가에 달려 있다. 세녹스 생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유사석유에 대한 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미납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고 제품생산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7개월정도가 흘렀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6일의 1차 공판은 피고인 세녹스 생산회사측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이후 4월 17일과 5월 1일 두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측의 잇따른 증인요청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공방만이 계속되고 있다.

세녹스가 법정에서 유사석유로 판정나기 이전에 그 결과를 미리 속단해 원료공급을 차단해 생산이나 판매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용제수급조정명령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각종 행정조치의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공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석유업계는 기약없이 세녹스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석유유통사업자들은 또다시 알콜첨가제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알콜첨가제 판매사업에 뛰어난 유통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알콜연료는 정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문방구나 카센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또 알콜연료 판매사업자들중 상당수는 이미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 경기도 일원의 모 알콜첨가제 판매점들 수십여개소는 판매과정에서 유사석유 판매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당했거나 제품공급을 받지 못하며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초기 투자비 수천만원씩을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모 알콜첨가제 총판은 판매점 모집과정에서 국내 최대 정유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선전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초 부천에서 세녹스 판매점을 개설했던 한 사업자는 점포와 운반용 탱크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투자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공급받은 제품은 20리터 용기 1백60여통에 불과했다고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나마 현재는 아예 제품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소방관서로부터 위험물 취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포함하면 피해금액이 더 커져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산회사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한 산자부는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내 공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세녹스 변호인측의 추가적인 증인요청이 잇따르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 공판과정은 더 늘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설령 1심에서 세녹스가 유사석유로 판정난다고 해도 피고인측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논쟁은 더욱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관련법 정비와 함께 공정한 여론형성이 중요하다

세녹스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정부기관들은 잇따라 대체연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제한했고 재정경제부도 연료 세금부과대상에 대한

그렇게도 좋은 제품이라면 정유사들 역시 휘발유를 대신해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이 제품을 판매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에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정을 구체화했다. 산업자원부는 아예 기존의 석유사업법에 대체연료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법령칭도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연료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법령 강화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인 규제근거를 강화하고 명문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또다시 불거지더라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대중적인 판단의 잣대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세녹스 사태를 접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대중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알콜첨가제가 왜 유사석유에 해당되고 유통이 차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앞서 선정적이고 단편적인 흥미중심의 접근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알콜첨가제 업체가 주장하는 환경친화성이나 수입대체효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여론화시키고 신뢰를 보내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반론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도 좋은 제품이라면 정유사들 역시 휘발유를 대신해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이 제품을 판매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에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첨가제로서의 성능이 휘발유와 정확히 6:4로 혼합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매연배출 등에서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실제 판매과정에서 그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찾아 볼 수도 없었다.

우리와 달리 알콜연료 판매를 허용했던 일본에서조차 위해성과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사석유로 판정받아 유통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처벌이 불가피했고 제품공급 중단도 불을 보듯 뻔했지만 오히려 각종 언론의 흥미위주 보도행태는 일반 국민에게 알콜첨가제를 홍보하고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전국적으로 수많은 총판과 판매점을 만들어 내고 이들 사업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알콜첨가제에 대한 법원의 유사석유 판단이 지연되고 그 과정이 각종 언론에 중계되며 대중적인 화제거리로 부상되는 것은 분명 관련업체들이 원하는 바이다. 알콜첨가제에 대한 시각이 흥미 위주에 머물렀던 결과로 우리나라의 연료시장은 여전히 유사석유 논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상호 유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정부당국의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대중여론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적인 책임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유사석유는 언젠가 또다시 연료시장을 쥐고 흔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라는 점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